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大田直轄市長
2. 件 名：大田直轄市 火災豫防條例改正案
3. 案 件 要 旨：別 添
4. 檢 討 意 見：別 添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年 9月 日

內 務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鄭 泰 益



大田直轄市 火災豫防條例改正案
檢 討 報 告 書

1992. 9.

内 務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大田直轄市 火災豫防條例改正案
檢 討 報 告

本 條 例 案 은 1992. 9. 21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2. 9.22.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消防法이 改正됨에 따라 改正法律이 條例에 委任한 事項의 整
理 및 施行中 導出된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가. 漁貝類 養殖場用 暖房施設을 위한 危險物 貯藏·取扱基
準을 마련함 (案 第26條)
- 나. 農藝用 및 養殖場用 暖房施設을 위한 危險物貯藏方式에
屋內 貯藏施設을 追加함 (案第26條 第5項)
- 다. 液體·氣體 燃料를 長時間 使用하는 廚房設備 및 사우나施
設 과 危險物을 使用하여 作業하는 放電加工機設備 그리
고 危險物을 臨時貯藏·取扱하는 安全 基準을 新設함.
(案第3條, 第8條, 第15條, 第27條)
- 라. 火災發生 憂慮가 많은 溶劑 抽出·化學·粉碎·디핑·射
出 및 成形工程 設備에 關한 安全管理 基準을 消防對象
物 自體에서 마련하여 自體點檢時 活用 할 수 있는 根據
를 마련함
(案第20條)

마. 이 條例가 定한 違反事項에 대하여는 1次에 한하여 是正促求를 할 수 있도록 함 (案第40條)

바. 法律14條에 의한 消防의날 行事に 關한 事項을 마련함.
(案第41條)

사. 탱크의 漏油등으로 인한 火災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屋內 탱크·屋外탱크·地下탱크는 充水試驗을 거친 탱크를 使用토록함. (案第25條 第1項)

아. 核燃料및 아세치렌가스 取扱申告, 危險物の 類別 共通基準, 室內裝飾物の 방염處理等은 施行令 및 技術基準規則에서 規定 하고 있으므로 削除하고 선언적 意味와 常識的인 內容도 削除함.

자. 消防法 改正에 따른 條文 整理함(第15條 → 第16條, 第25條→ 第24條)

3. 檢 討 意 見

本 條例案은 生活環境 變化와 함께 불을 使用하는 各種 施設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불에 대한 安全基準을 보다 強化하고 消防業務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關聯 消防法이 定하는 火災豫防의 基準을 明白히 하고자 하는 것임.

本 案件은 消防法 改正에 따라 同法이 委任한 火災豫防의 基準을 現實에 맞게 調整하는 內容이라 할 수 있음.

主要 内容を 말씀드리면

첫째 案第26條의 危險物 貯藏·取扱基準에 있어서, 現行 農藝用 暖房施設에 만 設置基準을 마련하였으나, 여기에 漁貝類 養殖

場用暖房施設을 追加 指定하여 漁民安全을 圖謀토록 하였으며, 同...條 第5項에 農藝用 및 養殖場用 暖房施設을 위한 危險物 貯藏 方式이 屋外貯藏·屋內탱크·屋外탱크·地下탱크로 規定되어 있는 것을 屋內貯藏도 包含시켜 危險物의 貯藏을 容易토록 하였음.

둘째 불을 使用하는 設備中 廚房施設 및 사우나 施設 그리고 危險物을 使用하여 作業하는 放電加工機設備에 대하여도 安全管理 基準을 마련 하였음. (案第 3條, 第8條, 第15條)

< 불을 使用하는 設備 >

現 行		改 正	
· 로 및 화덕	· 네온관등設備	· <u>廚房設備</u>	· 네온관등 設備
· 보 이 라	· 무대裝置等의	· 보이라	· 무대裝置等의 設備
· 난 로	電氣設備	· 난로	· <u>放電加工機</u>
· 벽부난로	· 피뢰設備	· 벽부난로	
· 乾燥設備	· 수소가스를	· 乾燥設備	
· 간이탕비	充電하는	· <u>사우나施設</u>	
設備	機構	· 간이탕비	
· 불티가 생		設備	
기는 設備		· 變電設備	
· 變電 設備		· 發電設備	
· 축전지設備		· 축전지設備	

셋째 案第20條에 産業施設의 工程에서 火災發生 憂慮가 있는 溶劑抽出·化學·粉碎·디핑·코팅·射出에 關한 安全基準을

마련하여 産業體 火災豫防에 徹底를 기하도록 하였는바, 最近 高度의 産業技術 發達에 따라 可燃性 化學製品 使用이 날로 增加됨을 볼때 火災에 대한 危險性은 항상 潛在되어 있어, 이에 대한 對策 마련이 要求되어 왔음.

넷째 불을 使用함에 있어 現行 修例가 定하는 基準을 違反할 境遇와 危險物 取扱申告를 怠慢히. 할 境遇 各各 20萬원 내지 10萬원의 過怠料를 賦課 하였으나,

1次에 한하여 是正을 促求할 수 있도록 하여 處罰爲主에서 啓導是正爲主로 緩和 하였음. (案 第40條)

다섯째 案第41條에 消防官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每年 11月 9日을 消防의 날로 指定 하였음.

여섯째 住宅의 暖房用危險物 貯藏 取扱에 있어 탱크 製作使用時 現行 水壓試驗만 實施하던것을 充水試驗도 받도록 하여 탱크의 漏油등으로 인한 火災危險을 事前 防止토록 하였음. (案第2條)

本 案件은 各種 火災를 事前에 豫防하여 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함으로써 公共의 安寧秩序 維持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今番 火災豫防을 위한 基準마련의 擴大 措置는 매우 바람직 하다고 보며, 關聯 消防法에 의한 委任事項으로써 施行上 問題點이 없을 것으로 思料됨.

用 語 解 說

- 방전가공기 - 전기불꽃을 이용하여 정교한 절삭가공을 하는 기계로서, 이때 발생하는열을 식히기 위하여 석유등 위험물을 채운다.
- 디핑 - 도금 (용액에 물체를 넣어 피복하는 것)
- 후렌지접속 - 배관과 배관을 연결할때 그사이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고무류
- 그리스휠타, 엑스트랙터 - 휠타의 명칭으로서 환기통에 끼이는 유지성분을 제거하는 장치
- 간이탕비설비 - 주방식이 아니고 사무실등에서 커피등을 끓이기 위하여 설치된 장소
- 큐피클식 - 작은실에 캐비넷식으로 설치한 변전설비
- 인락크물 - 빠다종류로서 배관등이 벽체를 통과할때 틈사이를 매우는 반액체 물질
- 그레비아 인쇄고무 - 그레비아 잉크(제2석유류)를 사용비닐에 인쇄하는 과정 (비닐에 그레비아 잉크를 열로 밀착)
- 기모기 - 섬유류 털을 열로 세우는 기계명
- 스프렛타 - 어떤 물체를 쪼개는 기계
- 용제 추출 - 물질을 용해시켜 뽑아냄.
- 사출 - 원하는 물질을 빼내는 것
- 성형 공정 - 계획된 모형을 만드는 과정